

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실천사항

(2021.09.01 개정)

1. 목적

이 실천사항은 당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‘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’에서 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’(이하 “하도급법”이라 함)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 실천사항

2.1 위원회의 구성

2.1.1 위원회는 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 하되,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.

2.1.2 위원회의 구성원 중 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.

2.2 위원회의 운영

2.2.1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,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2.2.2 심의 안건이 없을 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. 그러나, 안건이 없는 경우에도 “안건 없음”에 대한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기록, 관리한다.

3. 위원회의 심의

3.1 위원회의 심의사항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3.1.1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(사전 심의)

(1) 심의 대상 하도급거래

- 1) 협력사별 신규개발차종 하도급거래 금액이 직전연도 하도급거래금액의 10% 이상인 부품 제조 위탁 거래
- 2) 신규개발차종 금형비 10억원 이상의 제작 위탁 거래

(2) 심의사항

- 1) 서면 사전 발급의무 준수 여부
- 2)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위반 여부
- 3) 부당 특약 금지 위반 여부
- 4)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위반 여부
- 5)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 여부
- 6)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위반 여부
- 7) 기타 업체 선정, 계약 체결 및 가격 결정 과정의 공정성 및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

3.1.2 협력사 등록·취소기준 및 절차 등의 적절성 여부

3.1.3 협력사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건

필요 시 관련 협력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
3.2 위원회의 심의

3.2.1 심의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가결(적절) 또는 부결(부적절) 여부를 심의한다.

3.2.2 위원회의 의결은 전원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가결 및 부결을 결정한다.

3.2.3 심의시 부적절 의견이 발생하면 관련자료 보완후 재심의를 실시한다.

3.2.4 재심역시에도 반대의견이 발생하면 다수결로 가결 및 부결을 결정한다.

3.3 후속 조치

3.3.1 각 심의위원은 가결 또는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관련부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3.3.2 협력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는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.

3.3.3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인사상 불이익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4. 문서 보관

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